

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제정 안내

2021.9.25.

1. 제정근거

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6 조 제 2 항

2. 사유

회사의 임직원 및 금융상품판매대리·중개업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

3.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

금융상품의 개발, 판매 및 금융소비자에 대한 민원·분쟁 처리 등을 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보호의 실효성 제고

4. 적용대상

회사의 모든 임직원과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한 모든 업무에 적용되며, 회사의 업무 일부를 위탁 받은 자 및 위탁업무에 대해서는 그 위탁 범위 내에 한하여 적용함

5. 적용시점: 2021. 9. 25.